

#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( 류제동 의원 발의 )

「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고흥군의회의 회의 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7월 8일

고흥군의회의 의장



1. 조례명 :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2. 제정이유

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고흥군협의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.

3. 주요 내용

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에 관한 규정(안 제1조~제2조)

나. 기능과 운영·사무처리 등에 관한 규정(안 제3조~제4조)

다. 경비 및 인력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(안 제5조~제6조)

라. 공공시설의 이용 및 포상에 관한 규정(안 제7조~제8조)

#### 4. 예고기간

○ 2020. 7. 8. ~ 7. 28. (20일간)

#### 5.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0. 7. 29.(수)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(의회사무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내용 :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

- 개 인 :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- 기관·단체 :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 성명, 주소, 전화번호

○ 제출처 : 고흥군의회 의회사무과

- 주 소 :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(59542)

- 전 화 : 061-830-6065 (FAX 061-830-5595)

○ 제출방법 : 우편, FAX, 직접방문

붙임 1.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.

2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.

##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”이란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9조제4항 및 「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(이하 “통일자문회의”라 한다)의 사무를 대행하는 고흥군을 말한다.

**제3조(기능)** 통일자문회의 고흥군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평화통일에 관한 여론 수렴
2.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
3.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
4. 그 밖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**제4조(운영·사무처리 등)** ① 대행기관장인 고흥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협의회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.

1.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
2.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
3.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4.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.

**제5조(경비의 지원)** ①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
2.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
3.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

4.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
  5.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
  6. 협의회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
- 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,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6조(인력 등 지원)**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과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공공시설의 이용)** 군수는 협의회 운영 및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,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**제8조(포상)** 군수는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「고흥군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## **부칙**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조례명 : 고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조례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